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14 선고 2020가합1056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12. 13 선고 2023나13035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2. 14 선고 2020가합105659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행난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권규, 김원진, 장영재, 정홍철

변론 종결 2023. 1. 12.

판결 선고 2023. 2.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7. 7. 31. 체결된 금전 17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8. 10. 체결된 금전 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취득 경위

1) D은 2012년경 C(개명 전 : E)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는 D에게 103,6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6.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5528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9. 13.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신력 없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막고 유사수신행위에 유인되어 거래를 하는 제3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C)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소외 회사의 F 센터장으로서 소외 회사의 수익구조에 관하여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여 원고 등 투자자로부터 피고(C) 개인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고, 피고(C)의 계좌로 입금받은 투자금도 이를 소외 회사에 곧바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원고(D)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C)의 다른 계좌 또는 피고(C)의 딸 B, 피고(C)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C)는 원고(D)가 금원을 투자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의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공모, 가담하여 원고(D)에게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원고(D)에게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2013. 10. 25. D으로부터 C에 대한 위 판결금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라고 한다)받은 후 2014. 1. 6.경 위 양도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1. 7. C에게 도달하였다.

나. C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

C는 2016. 7. 1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11. 7. 파산선고결정을, 2017. 4. 14.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으며, 2017. 4. 29.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에 대한 입금

피고는 C의 딸인데, C의 동생이자 피고의 외삼촌인 G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G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같다)로 2017. 7. 31.

170,000,000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제1입금행위'라고 한다)되었고,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C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의 I증권 계좌로 2017. 8. 10.

3,000,000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제2입금행위'라고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7, 8,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내지 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와 D 사이에 채권양도양수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고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D과 원고에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는 신탁법 제7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362 판결, 1996. 3. 26. 선고 95다20041 판결 등 참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6522 판결,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9, 10호증, 을 3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에 대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40,000,000원 이상의 대여금채권 또는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양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는 2013. 10. 25.경 이루어졌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꾸준히 C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 변제를 독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도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채권자를 '원고(구 : D)'이라고 기재한 점, ④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뒤에야 제기된 점, ⑤ D이 C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⑥ 피고는 D이 2021. 8. 10. C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소송신탁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는 C가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D을 위하여 일부 편취금을 변제하고 그 대가로 작성된 문서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가 원고로 하여금 D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 대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는지 본다.

3) 앞서 든 증거들(특히 이 사건 판결의 내용), 갑 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C가 D에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 해당한다(C에 대한 파산·면책절차에서 파산관재인도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비면책채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C의 무자력 및 사해행위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G계좌는 C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므로,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는 무자력 상태의 C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G계좌는 피고가 G의 허락을 받아 장외주식거래 용도로 사용했던 계좌라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G계좌를 C가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4호증, 을 39 내지 7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G계좌는 C가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G계좌에서는 C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돈(예 : '도시가스 C', 'C 실손', 'J조합 C', 'K C' 등), C의 자녀들인 피고와 L, C의 배우자로 보이는 M와 관련된 세금, 보험료, 핸드폰 요금, 학원비 등이 수시로 출금되었고, 이 사건 C계좌로 직접 돈이 송금되거나 'C'의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다. 또한 2016. 12.경부터 C의 N카드대금이 수회 피고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이하 같다)로 입금된 후 피고의 위 계좌에서 N카드대금이 결제되기도 한다. G 또는 피고가 C나 L, M를 위하여 장기간 위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G나 피고가 이 사건 G계좌의 처분·관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G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그 개설일인 2015. 7.경부터 종종 P에서 현금입출금기기(ATM)를 이용하여 현금이 출금되는 모습(2015. 7. 3., 2016. 9. 2., 2016. 9. 24., 2016. 9. 30. 등 다수)이 나타나는데, C는 2013. 5. 1.부터 2017. 6. 1.까지 P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G계좌를 차명계좌로 활용하여 스스로 장외주식거래를 하였다면서 피고 명의로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G계좌를 이용하여 장외주식거래를 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장외주식거래를 할 때 이 사건 G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는 과거 근무하면서 장외주식거래를 하였던 주식회사 Q에 대한 도의상 피고 명의의 계좌를 활용하여 장외주식을 거래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G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 무렵 피고 명의의 R증권계좌 및 I증권계좌를 통하여도 장외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G계좌의 처분·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굳이 이 사건 제1입금행위 당시 적요란에 'C'라고 표시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C 명의로 장외주식을 사기

위하여 편의상 위와 같이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입금행위로 취득한 돈으로 G 및 S의 명의로 장외주식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가 위 돈으로 G 명의의 장외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C의 명의로 장외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G 또는 S 명의의 장외주식을 취득한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제1입금행위 무렵 S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C계좌에서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 장외주식거래로 보이는 입출금거래내역이 다수 발견된다(예 : 2017. 7. 5. 'T 3799', 2018. 1.경 'U 계약금', '장외모임 회비', 'T 잔금', 'V 계약' 등). 또한 이 사건 C계좌에서 이 사건 G계좌로 돈이 송금되어 위 돈이 장외주식거래에 활용되는 모습(예 : '2018. 8. 8. 'W계약금'명목으로 이 사건 G계좌로 10,900,000원이 출금되고, 곧바로 이 사건 G계좌에서 R증권계좌로 'W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이 입금된다)도 찾아볼 수 있다.

(4) 피고는 2017. 4. X와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을 41호증), 2016. 7. 25. 이 사건 C계좌에 'X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요란에 기재된 입금내역이 존재한다.

3) C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로 인하여 C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가) C의 소극재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입금행위 당시 C의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액 197,821,690원(= 원금 103,6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6.부터 2013.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있었고, 이 사건 제2입금행위 당시의 소극재산은 198,318,873원(위 197,821,690원에 2017. 8. 1.부터 2017. 8. 1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금액)이었다.

나) C의 적극재산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입금행위는 이 사건 G계좌에서, 이 사건 제2입금행위는 이 사건 C계좌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가 이루어진 2017. 7. 31. 및 2017. 8. 10.은

C에 대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C가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을 받은지 불과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따라서 위 일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16. 12.경 파산관재인에게 베이비시터, 김밥가게 등 아르바이트로 월 70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C의 연령이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 확정 이후 C가 상당한 수준의 급여를 수령하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C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상당한 가액의 적극재산을 새로이 형성하였을 가능성은 미미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G계좌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 당시 이 사건 G계좌 및 이 사건 C계좌의 각 잔액을 기준으로 C의 적극재산을 산정하기로 한다.

(2) 2017. 7. 31. 이 사건 제1입금행위 후 이 사건 G계좌의 잔액은 3,486,888원, 이 사건 C계좌의 잔액은 316,471원이고, 2017. 8. 10. 이 사건 제2입금행위 후 이 사건 G계좌의 잔액은 1,284,798원, 이 사건 C계좌의 잔액은 2,690,371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입금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액은 173,803,359원(=이 사건 제1입금행위로 입금된 금액 170,000,000원 + 당시 이 사건 G계좌 잔액 3,486,888원 + 이 사건 C계좌의 잔액 316,471원)이고, 이 사건 제2입금행위 당시 C의 적극재산액은 6,975,169원(=이 사건 제2입금행위로 입금된 금액 3,000,000원 + 당시 이 사건 G계좌 잔액 1,284,798원 + 이 사건 C계좌의 잔액 2,690,371원)이다.

(4)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 이후 이 사건 G계좌 및 이 사건 C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개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돈이 입금되고, 위 돈이 장외주식거래로 출금되는 모습이 보인다. 따라서 C의 적극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수시로 입금된 금액을 고려할 수는 없다.

다)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제1입금행위 시 C의 적극재산 합계액은 173,803,359원인 반면, 소극재산 합계액은 197,821,690원이므로, 이 사건 제1입금행위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2입금행위는 이 사건 제1입금행위로 인하여 C의 적극재산이 대폭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지출행위이고 이 사건 판결금채권도 198,318,873원으로 증가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제2입금행위 당시에도 C는 채무초과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C의 사해행위 C와 피고의 관계, 입금한 돈이 173,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C와 피고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는 C의 잔존 적극재산 대부분을 피고에 게 증여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제1, 2입금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 B와 C 사이에 2017. 7. 31. 체결된 금전 170,000,000원의 증여계약 및 2017. 8. 10. 체결한 금전 3,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73,000,000원(= 170,000,000원 +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전서영

판사이용제

판사정우성